



 금융위원회	<b>보도자료</b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시부터 즉시</b>	배포	
<b>책임자</b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석란(02-2100-2680)	<b>담당자</b>	차영호 사무관 (02-2100-2683)	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박권추(02-3145-7700)		홍순간 팀장 (02-3145-7725)	

### 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 정은보)는 2017. 6. 7.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디오에 대하여 과징금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
-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(주)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,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,
-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(코스닥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,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(붙임)

###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7.6.7. 의결)

(회계심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적사항	조치
<b>(주)디오</b> 결산기 : 2012.12.31. 2013.12.31.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: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	<b>【회사】</b> ① 거래처별 제품교환 관련 기간귀속 오류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(연결 및 별도 '12.12.31. 1,936백만원, '13.12.31. 1,332백만원, '14.12.31. 1,724백만원, '15.12.31. 3,501백만원, '16.12.31. 3,254백만원) - 회사는 일부 거래처에 대해 제품을 반환받았음에도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매출원가만 취소하거나,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출고분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으나, 매출원가만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반품회계처리 기간귀속 오류('12.12.31. 별도 4,602백만원, '13.12.31. 연결 140백만원, 별도 1,874백만원, '14.12.31. 연결 및 별도 74백만원, '15.12.31. 연결 및 별도 55백만원, '16.12.31. 연결 및 별도 10백만원) - 회사는 종속회사 및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반품을 해당 회계연도에 즉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, 이후 회계연도에 반영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③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 등('13.12.31. 연결 5,520백만원, 별도 2,980백만원, '14.12.31. 연결 6,554백만원, 별도 3,606백만원, '15.12.31. 연결 3,214백만원, 별도 3,965백만원) - 회사는 제품이 반환된 거래를 단순 교환거래로 판단하고,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입 등으로 인한 반품을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반품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,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④ 반품을 제품매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('13.12.31. 연결 747백만원) - 회사는 중국의 현지 대리상에 판매한 제품을 중국 소재 종속회사가 반품받은 거래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상 반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품의 매입으로 처리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	<b>회 사 :</b> - 과징금(308.7백만원) - 감사인지정 1년 (2018.1.1.~2018.12.31.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디오	[2012.12.31.]	
	별도당기순이익      △2,036 →      △4,909 별도자기자본        49,241 →      46,368 연결당기순이익      △2,221 →      △2,379 연결자기자본        47,524 →      47,366	
	[2013.12.31.]	
	별도당기순이익      △8,295 →      △6,216 별도자기자본        41,413 →      38,470 연결당기순이익      △6,594 →      △8,323 연결자기자본        41,601 →      37,496	
	[2014.12.31.]	
	별도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 344 →      △1,362 별도자기자본        47,731 →      43,082 연결당기순이익      △1,902 →      △3,985 연결자기자본        45,454 →      39,110	
	[2015.12.31.]	
	별도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 7,840 →      5,115 별도자기자본        84,421 →      77,046 연결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9,435 →      8,883 연결자기자본        83,422 →      76,695	
	[2016.12.31.]	
	별도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19,293 →      20,009 별도자기자본        109,454 →     106,657 연결당기순이익        20,192 →      20,908 연결자기자본        113,002 →     110,205	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대주회계법인	<p><b>【감사인】</b></p> <p>① 거래처별 제품교환 관련 기간귀속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(연결 및 별도 '12.12.31. 1,936백만원, '13.12.31. 1,332백만원, '14.12.31. 1,724백만원, '15.12.31. 3,501백만원, '16.12.31. 3,254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최초 인도후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패키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거래처별 매출액과 적정한 수량의 제품인도 여부를 비교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,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p> <p>② 반품회계처리 지연 관련 감사절차 소홀('12.12.31. 별도 4,602백만원, '13.12.31. 연결 140백만원, 별도 1,874백만원, '14.12.31. 연결 및 별도 74백만원, '15.12.31. 연결 및 별도 55백만원, '16.12.31. 연결 및 별도 10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반품거래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적절히 회계처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p> <p>③ 반품충당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('13.12.31. 연결 5,520백만원, 별도 2,980백만원 '14.12.31. 연결 6,554백만원, 별도 3,606백만원, '15.12.31. 연결 3,214백만원, 별도 3,965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반품거래가 반품을 추정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p> <p>④ 반품의 제품매입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('13.12.31. 연결 747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중국 대리상에게 판매한 제품을 중국소재 증속회사가 인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연결실체 관점에서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p>	<p><b>대주회계법인 :</b></p> <p>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%</p> <p>- (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</p> <p><b>공인회계사 : 2인</b></p> <p>- (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주권상장(코스닥제외) 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</p> <p>- 직무면수 6시간</p>

## ※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

### 감사인 지정

-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

### 과징금

-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~~舊~~증권거래법,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

###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

-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(100%이내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

### 주권상장(코스닥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
- 주권상장법인(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)·'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'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

###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

-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